##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06 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: 주호영・金炳旭・이종배

구자근 · 김태흠 · 김도읍

이 용・김희곤・류성걸

김형동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,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정되지 않아 영업의사가 없음이 분명한업소에도 각종 행정 홍보·교육 등의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방문 사항발생 시 그 대상에 계속 포함되어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있음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).

법률 제 호

##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	제11조(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다음	③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	
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
	<u>경우</u>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